

국회의원의 하절기 옷차림에 관한 규칙안

의안 번호	2676
----------	------

발의연월일 : 2024. 8. 9.

발 의 자 : 박지혜 · 이소영 · 김승원

전진숙 · 임미애 · 강준현

서영교 · 오세희 · 이기현

민형배 의원(10인)

제안이유

우리나라에는 국회의원의 옷차림에 관한 규범이 별도로 마련되어 있지 않으며, 「국회법」에서 “의원은 의원으로서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제25조)”고만 규정하고 있음. 그럼에도 국회에서 정장을 착용하는 것이 일종의 행동 규범으로 인식되어, 이러한 규범에서 벗어난 옷차림을 한 의원에게 사회적 비판이 제기되는 등 논란이 발생하기도 하였음.

그런데 전 세계적인 기후위기가 심화됨에 따라 여름철에도 국회에서 정장 착용을 강제해온 기존 관행의 개선이 요구되고 있으며 온실가스의 배출을 줄일 수 있는 국회의원 옷차림 규정의 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국회의원의 하절기 업무능률을 향상시키고 국회가 기후위기에 적절히 대응하며 탄소중립을 달성하는 데 이바지할 수 있도록 국회의원의 하절기 옷차림에 관한 국회규칙을 제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가. 국회의원의 옷차림은 국민에 대한 존경을 표현하고 국회의원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할 수 있어야 한다는 기본원칙을 규정함(안 제2조).
- 나. 국회의원은 하절기에 소매가 짧은 상의 등 온실가스 배출 감소에 기여할 수 있는 옷차림을 할 수 있음(안 제3조제1항).
- 다. 하절기는 원칙적으로 매년 6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이나, 국회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하여 달리 정할 수 있음(안 제4조제2항).

국회의원의 하절기 복장에 관한 규칙안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회의원의 하절기 옷차림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가가 기후위기에 적절히 대응하고 탄소중립을 달성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국회의원 옷차림의 기본원칙) 국회의원의 옷차림은 국민에 대한 존경을 표현하고 국회의원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할 수 있어야 한다.

제3조(하절기 옷차림) ① 국회의원은 하절기에 온실가스의 배출 감소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옷차림 또는 이에 준하는 옷차림을 할 수 있다.

1. 소매가 짧은 상의
2. 넥타이를 착용하지 않은 옷차림
3. 재킷을 착용하지 않은 옷차림

② 제1항의 옷차림이 제2조에 따른 국회의원 옷차림의 기본원칙에 부합하는지에 관하여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국회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하여 정한다.

제4조(적용 범위) ① 이 규칙은 본회의장, 위원회 회의장 및 그 밖에 국회의 공식적인 회의나 활동이 이루어지는 장소에서 적용한다.

② 제3조제1항의 하절기는 매년 6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당해연도의 기후 또는 국회 회기 일정 등을 고려하여 국회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하여 달리 정할 수 있다.

부 칙

이 규칙은 국회가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